

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



① 가족돌봄휴가란

가족돌봄휴가



근로자가 **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**으로 인해 **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** 사용할 수 있는 (무급) 휴가(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)

허용예외



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(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)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②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

휴가기간



연간 최대 **10일**(1일 단위로 사용 가능)

※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

신청방법



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을 기재한 **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**

③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



'21.1.1.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(8시간) **5만원**, 최대 **10일** 지원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) 참고

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